

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별 지원)

1. 공통 사항	335
2.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337
3. 장애아 보육 지원	342
4.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원	351
5.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354
6. 방과후 어린이집	364
7. 기본보육료 지원	366
8. 차량운영비 지원	372
9. 교재·교구비 지원	373
10.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374
1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389
12.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395
13.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398
14.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400
15.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402
1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405
17.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408
18.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415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1

공통 사항

인건비 지원 원칙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지원어린이집(이하 ‘정부 지원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2017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
 - 직장어린이집(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도 동 지급기준 이상을 준수
-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
 - ※ 단, 민간어린이집 중 장애아통합 교사 인건비,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시설은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 아님
- 『사회복지시설 관리인내』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원장 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보육교직원 60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기준 인건비 지원중단,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 ※ 동 사항은 정년제가 아닌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기준임
 - ※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 : 설립자의 직계 존비속, 제한적(2002.1.1.일 현재 설립자가 설립한 시설에 시설장으로 재직중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이외에 설립자 또는 설립자의 직계존비속 중 어느 누구도 시설장으로 재직중인 사실이 없는 경우)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인건비 지원

- 신축비 국고지원 국공립어린이집(예시 : 농촌소규모어린이집 신축(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국고지원 등 타부처 사업 포함)은 별도 승인 없이 지원
- 시·도 또는 시·군·구가 자체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년 3월 말까지 승인신청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국고지원(CIS 등록 및 승인확정필요)
- 2003년도 3월1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은 인건비 신규지원 승인 대상에서 제외
- 인건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등은 운영 법인·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정원이 증가하는 경우에 재승인 요청해야 함
- 인건비 지원 승인을 받지 못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지자체 자체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등은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기준 적용 가능

본 지침의 인건비 지원율은 월 지급액에 대한 지원율을 의미

- 월 지급액이라 함은 “2017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17.1월부터 적용)”의 월 지급액을 의미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회계보고 의무

- 보조금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의해 신청하여야 함. 또한,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는 어린이집에 한하여 지원

■ 2017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

(단위 : 원)

호봉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1	23,497,200	1,958,100	19,461,600	1,621,800	16,227,600	1,352,300
2	24,132,000	2,011,000	20,025,600	1,668,800	16,456,800	1,371,400
3	24,919,200	2,076,600	20,643,600	1,720,300	17,128,800	1,427,400
4	25,665,600	2,138,800	21,291,600	1,774,300	17,485,200	1,457,100
5	26,418,000	2,201,500	21,945,600	1,828,800	17,870,400	1,489,200
6	28,076,400	2,339,700	23,454,000	1,954,500	18,681,600	1,556,800
7	29,068,800	2,422,400	24,447,600	2,037,300	19,498,800	1,624,900
8	29,718,000	2,476,500	24,895,200	2,074,600	19,819,200	1,651,600
9	30,576,000	2,548,000	25,574,400	2,131,200	20,472,000	1,706,000
10	31,441,200	2,620,100	26,311,200	2,192,600	21,104,400	1,758,700
11	32,527,200	2,710,600	27,267,600	2,272,300	21,956,400	1,829,700
12	33,476,400	2,789,700	28,088,400	2,340,700	22,700,400	1,891,700
13	34,195,200	2,849,600	28,807,200	2,400,600	23,316,000	1,943,000
14	34,964,400	2,913,700	29,448,000	2,454,000	23,956,800	1,996,400
15	35,734,800	2,977,900	30,090,000	2,507,500	24,573,600	2,047,800
16	36,717,600	3,059,800	30,996,000	2,583,000	25,402,800	2,116,900
17	37,461,600	3,121,800	31,663,200	2,638,600	26,018,400	2,168,200
18	38,282,400	3,190,200	32,330,400	2,694,200	26,659,200	2,221,600
19	39,078,000	3,256,500	32,997,600	2,749,800	27,276,000	2,273,000
20	39,770,400	3,314,200	33,664,800	2,805,400	27,916,800	2,326,400
21	40,941,600	3,411,800	34,758,000	2,896,500	28,933,200	2,411,100
22	41,712,000	3,476,000	35,425,200	2,952,100	29,523,600	2,460,300
23	42,404,400	3,533,700	36,015,600	3,001,300	30,114,000	2,509,500
24	43,096,800	3,591,400	36,682,800	3,056,900	30,678,000	2,556,500
25	43,867,200	3,655,600	37,298,400	3,108,200	31,293,600	2,607,800
26	44,584,800	3,715,400	37,914,000	3,159,500	31,858,800	2,654,900
27	45,252,000	3,771,000	38,452,800	3,204,400	32,346,000	2,695,500
28	45,945,600	3,828,800	39,043,200	3,253,600	32,911,200	2,742,600
29	46,586,400	3,882,200	39,684,000	3,307,000	33,450,000	2,787,500
30	47,305,200	3,942,100	40,249,200	3,354,100	34,014,000	2,834,500

주1) 보육교사 :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주2) 특수교사 수당 20만원은 별도 지급

2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가. 대상 어린이집

1) 국공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 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3) 법인·단체 등(지원) :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국고지원 어린이집

-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범탁아소
- 근로복지공단이 건립한 어린이집
-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중 사회복지관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 사회복지시설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노동부에서 설치, 지원한 근로청소년회관내 설치 어린이집 포함)
- 보육교사교육원 부설 어린이집
-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95~'97년, 보육사업 3개년 확충계획)
- '99년도 이전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학교, 종교단체 등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4) 지원 제외 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운영정지 6개월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은 시설
 -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
 - * 이동학대의 경우 '17.3.1. 이후 발생한 이동학대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국공립어린이집은 위탁취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호) 실시

나. 지원기준

1) 원장 : 인건비 80%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 중 현원 20인 이하인 어린이집 또는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으로서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지 않을 경우 미지원(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에는 원장 인건비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중에서 농어촌 지역 소재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원 11인 이상을 조건으로 지원. 지자체 특수시책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도시 지역도 가능

※ 2017년 신규인가를 받은 정원 21인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은 당해년도에 한하여 현원 20인 이하여도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

2) 보육교사 : 소요 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

(가) 영아반 교사 : 인건비의 80% 지원

- 0세반 : 아동 3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1세반 : 아동 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3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2세반 : 아동 7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4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나) 유아반 교사 : 인건비의 30%를 지원

- 3세반 : 아동 1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8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4세 이상반 :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11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교사 수급 등을 고려해 최소지원 기준 충족시 교사 인건비 지원 가능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

(다)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음(보육료로 충당)

(라)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혼합반 운영시 낮은 연령 기준으로 교사 인건비 지원

3) 법인·단체 등(지원)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

- 종교시설의 경우 예산 및 결산을 종교법인의 대표에게 제출하고,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시설에 한함

- 학교내 설치 어린이집의 경우 현원의 1/2 이상을 지역 주민 자녀를 보육하는 경우에만 지원

※ 동일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종교시설, 보육교사 교육원과 어린이집이 예산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별도 임명한 경우에만 해당

4)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가)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출산휴가로 인해 대체교직원 채용시 출산 휴가자의 호봉을 기준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

-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출산휴가자가 실제 받는 급여와 고용보험기금에서 받는 산전후휴가급여와의 차액 보전에 활용하고, 남은 금액은 대체교직원 인건비로 사용 (단, 집행잔액은 익월에 반납)

※ 출산휴가자에게는 고용보험기금에서 90일간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됨

(나)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육아휴직, 산재휴직 등에 따라 대체교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대체교사의 호봉에 따라 인건비 지원

※ 대체교직원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휴직자)에게 지원되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므로 대체교사 채용시 참조

다. 지원시점(인건비 승인시절)

○ 어린이집 설치 인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건비 지원기준 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날(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

※ 단, 신규·재지원시 지원요건을 갖추어 월 15일 초과운영 할 경우 당월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가능

☑ 국고 지원 인건비 지원금 산출 방법

- 산출식 : 인건비 지급액의 80% 또는 30%
 $[월지급액 + 4대보험료 * 사업자부담분 + 퇴직적립금(월지급액/12)] \times 정부지원비율(80\% \text{ 또는 } 30\%) +$
 (특수교사수당 200,000원)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액만큼 차감 후 지원)

※ 단, 특수교사수당은 특수교사 수당 지원대상에 한함

☑ 4대보험료 적용비율

- 국민연금 부담금 : 월보수액 \times 9.0%/2
- 국민건강보험료 : 월보수액 \times 6.12%/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월보수액 \times 6.12% \times 6.55% / 2(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청구됨)
- 고용보험료 : 월보수액 \times 0.9%
 ※ 국공립 중 직영시설 등의 부담비율은 관련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달리 적용
- 산재보험료 : 월보수액 \times 0.7%
 * 사용자 및 근로자 자부담 별도

라.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 1) 농어촌지역(읍·면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지역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교사 1명 인건비 추가지원 및 조리원 1명 지원
 - 보육교사 : 보육교사(시설내 평균) 1인의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
※ 보육교사 추가 인건비 지원액에는 4대 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포함하지 않으며,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총액이 실제근무 보육교사의 인건비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
※ 현원 40인 미만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2) 대상지역(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근거)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준농어촌)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종전대로 준농어촌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음

마. 중소도시·대도시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 1) 평가인증발표일이 속한달의 익월부터 지원
- 2) 지원기준 :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
※ 현원 40인 미만 시설이라 하더라도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 지원
- 3) 지원중단 : 평가인증 취소 처분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아 평가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 사유 발생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농어촌(법 제2조) :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전 지역
 -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준농어촌(법 제33조) :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한다.
- 준농어촌(시행령 제9조 ②항) : 법 제33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2. 제1종 일반주거지역
 3. 보전녹지지역
 4. 자연녹지지역

가. 정의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나. 총괄

- 1)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비 지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참조
 - 지원대상 :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 지원단가 : 1,270,000원/m²(국비, 지방비 포함)
 - 개소당 396m²까지 지원

- 2)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장애아전문어린이집(교사대아동비율 1:3을 전제)으로 지정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 : 인건비 지원
 - 장애아전문어린이집(교사대아동비율 1:3을 전제)으로 지정받았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건비 지원 미승인 시설 : 장애아 1인당 기본보육료 402천원 지원

- 3)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설로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1:3)를 전제로 함
 - 장애아 통합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시설 : 월 지급액의 80% 또는 142.8만원 지원

- 4) 장애아 보육료 및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장애아보육료 : '장애아보육료' 참조
 -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438천원 지원
 -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해당반별보육료(만2세만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만3세만 이상은 시·도 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지원

-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 ‘방과후 보육료’의 ‘장애아동’ 참조
 -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시설 이용 장애 아동 : 정부지원단가(438천원)의 50%인 219천원 지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5) 장애아보육 내실화

-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인근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또는 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하여 특수교육진단평가,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등을 시행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제대로 된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장은 별도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아보육지원 가능
- 시·군·구에서는 장애아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일반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에는 장애아 전담교사 배치 등 지정요건을 갖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아 운영함으로써 장애아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함
- 장애아전담보육교사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 단,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 6개월 내에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배치 가능
- 장애아통합반은 총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정원 외로 보육가능

예시 장애아 3명+비장애아 20명을 장애전담교사 1명과 일반보육교사 1명이 통합 보육

-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어린이집의 경우 우선적으로 장애아통합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자를 신규로 선정하거나 재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애아 통합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
 - 장애아통합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을 받은 어린이집은 장애아 종일반·통합반을 1개 이상 개설 원칙
 - 기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사 시에도 장애아 통합보육을 실시한 운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1) 인건비 지원 대상 시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시설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로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

※ 보건복지부장관 인건비지원 미승인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없음(치료사, 조리원, 차량운영비 지원대상 아님)

2)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 장애아의 연령,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반을 편성·운영하고, 12세까지 입소 가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누리장애아반에 일반장애아가 혼합·편성 될 수 있는 반은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1개반만 가능하므로, 반 편성 후 장애아동의 입퇴소에 따라 시스템상 반배치와 실제 운영하는 반배치가 다를 수 있음

예 어린이집에 장애아 9명인 경우(누리장애아 5명, 일반장애아 4명)

① 반편성 : 누리장애아반 A(○○○), 혼합반 B(○○△), 일반장애아반 C(△,△,△)

② 반 운영 중 A반에 누리장애아(○) 1명 퇴소 후 일반장애아(△) 1명 입소한 경우

→ 시스템 상 누리장애아반 A(○○○), 혼합반 B(○△△), 일반장애아반 C(△,△,△)

* 혼합반은 한반만 편성 가능하므로 B반의 누리장애아 1명(○)을 A반으로 이동 후 입소하는 아동(△)을 B반에 배치

실제운영 누리장애아반 A(○○△), 혼합반 B(○○△), 일반장애아반 C(△,△,△)

-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40%까지 비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음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서 비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 비장애아 유아 보육현원이 9명 미만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내 수급상황(인근 지역 여유 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세반과 유아반 혼합 보육 가능(이 경우, 교사대 아동 비율은 2세반 기준으로 적용하고 누리과정을 적용해야 함)

예 2세아 10명, 유아 4명인 경우 2세반 1개반(2세아 7명)을 우선 편성하고 남은 2세아 3명과 유아 4명을 혼합반으로 편성하여야 함

○ 보육교사 등 배치

- 장애아 3인당 1인, 3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교사 3인중 1명은 특수교사로 배치해야 함)
- 교사 3인중 1명은 반드시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배치하되, 장애아 전담보육교사 대신 특수교사로도 배치가 가능
- 방과후 장애아의 교사 대 아동비율도 1:3이 원칙

-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3이 원칙이나,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퇴소 등을 감안하여 3개반당 1개반에서 반당 1인의 탄력편성 가능(단, 종일반과 방과후반은 분리하여 적용)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

-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 장애영유아의 수가 2명 이하인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나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7년 3월부터 취학하지 아니한 만 4세 이상 장애영유아에 적용)

○ 적용 예시

- 만 4~5세 장애아 2명 : 장애아전담보육교사 1명
- 만 4~5세 장애아 3명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
- 만 4~5세 장애아 4명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 만 4~5세 장애아 9명, 만 3세 장애아 6명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2명
- 만 4~5세 장애아 9명, 만 3세 장애아 9명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2명, 특수교사 1명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유치원과정의 특수교사가 대체 가능, 장애아전담교사는 특수교사가 대체 가능
 ※ 만 4~5세 장애아가 여러반으로 나누어져 편성된 경우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나 유치원과정 특수교사는 만 4~5세 아동이 포함된 반에 배치

3) 인건비 지원기준(인건비 지원시설)

○ 원장,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치료사 인건비 지원

구 분	원 장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지원조건	장애아동 현원이 12명 이상이고 4개반 이상 편성된 경우 (단, 미취학 장애아 현원이 9명 이상이고 장애아 종일반이 3개 반 이상 편성되어야 함)	소요현원(정원아내)에 대하여 지원 (아동 3명당 1인)	정규인력으로 채용된 경우에 한해, 아동 9명당 1명 지원 (교사대 아동비율 및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준수시)
지원액	월 지급액의 80%	월 지급액의 80%	월 지급액의 100%
수당(월·인)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에 한해 20만원 ※ 해당 월에 입면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20만원
현원감소시 지원 기준	12명 및 9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달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음	아동 현원이 2명으로 감소시까지 지원 유지, 현원이 1명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음	현원이 5명으로 감소시까지 지원할 수 있음

구 분	원 장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기타		보육교사는 반드시 장애아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시·군·구에서는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이수계획(보수교육 신청 자료) 등을 제출받은 후 인건비를 지원하여야 함)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의 40% 범위 내에서 비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은 정부 지원시설의 지원기준대로 지원

※ 민간 또는 가정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은 퇴직적립금 적립 금지

○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 지원

- (지원조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장애아방과후 보육을 일일 4시간 이상 할 경우에 지원하며,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교사에 한하여 지원
 ※ 단,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 6개월 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액)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100% 지원

- (반편성) 아동 3명을 기준으로 하며, 장애아 종일보육아동과 장애아 방과후 보육 아동은 같은 반 편성 불가

※ 단,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 6개월 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

- (기타) 장애아 방과후 보육아동은 정원범위 내에서 총 정원의 50%를 초과하여 보육할 수 없음

○ 기타 지원 사항

- 조리원 1명에 한해 지급액의 100% 인건비 지원

- 차량운영비(월 20만원) 지원

-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 동일 적용

4) 지정절차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 및 영유아 보육법령이 정하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의 지정서를 교부(정부지원 사전승인을 받아야 인건비 지원 가능)

5) 지정취소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 ③ 착오 등으로 잘못 지정받은 경우
 - ④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경우
 - ⑤ 법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⑥ 법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⑦ 법제3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⑧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그 밖에 원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 ⑨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시·군·구청장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지정 취소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한 시설을 대체 지정할 수 있음

6)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정원산정 기준 및 방법

- 면적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의 나목 1)을 따르며,
- 산정방법은 장애아를 12명 이상 정원에 포함하고, 총정원의 60% 이상을 장애아 정원으로 산정하여야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가능

※ 장애아 최소 정원산정 예시) 어린이집 총면적 200㎡, 보육실면적 150㎡인 경우

(종전) 총 22명 → (변경)* 총 29명(장애아 18명, 비장애아 11명)

1안) 보육실기준 : (종전) 총 22명*6.6㎡ → (변경) 총 29명(장애아 18명*6.6㎡, 비장애아 11명*2.64㎡)

2안) 총면적기준 : (종전) 총 25명*7.83㎡ → (변경) 총 31명(장애아 19명*7.83㎡, 비장애아 12명*4.29㎡)

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1) 지정대상

-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종일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종일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종일반 기준임)
※ 통합시설의 장애아동(미취학, 취학 장애아 포함)은 시설정원의 20% 이내여야 함

2)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의 장애아종일반

3)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및 지원액

- (지원기준) 장애아종일반을 편성·운영하거나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을 통합보육하는 경우 장애아보육 전담교사 1인당 인건비를 지원
 - 보육교사 최초 인건비 지원은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을 경우에 시작하되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된 경우 미취학장애아 현원이 2명일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음
 - 통합보육 미취학장애아 현원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액) 정부지원시설은 장애아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민간지정 시설인 경우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월 142.8만원 지원

※ 정부지원시설의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 지원

- 정부지원시설로서 장애통합시설에서 장애아방과후 전담보육교사를 배치하고 방과후 장애아의 교사 대 아동비율 1:3을 준수한 경우 월지급액의 100%를 지원
- 단, 이 경우에도 장애아 종일반 지원이 3개월간 연속으로 중단되면 지정취소

※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은 전액 월 임금으로만 지급(사용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퇴직적립금 등으로 지급 불가)

4) 보육교사 배치 기준

-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통합하여 보육하되 교사는 장애전담교사, 일반 보육교사 각각 1인씩 배치
 - 예** 장애아 3명 + 비장애아 20명
- 장애아 통합을 위한 장애아전담 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
 - 일반 보육교사는 반드시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
 - ※ 시·군·구에서는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이수계획(보수교육 신청 자료) 등을 제출받은 후 인건비를 지원하여야 함

○ 장애이동복지지원법에 따른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

-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 장애영유아의 수가 2명 이하인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나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7년 3월 부터 취학하지 아니한 만 4세 이상 장애영유아에 적용)

○ 적용 예시

- 만 4~5세 장애아 2명 : 장애아전담보육교사 1명
- 만 4~5세 장애아 3명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
- 만 4~5세 장애아 4명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 만 4~5세 장애아 9명, 만 3세 장애아 6명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2명
- 만 4~5세 장애아 9명, 만 3세 장애아 9명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2명, 특수교사 1명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유치원과정의 특수교사가 대체 가능, 장애아전담교사는 특수교사가 대체 가능
 ※ 만 4~5세 장애아가 여러반으로 나누어져 편성된 경우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나 유치원과정 특수교사는 만 4~5세 아동이 포함된 반에 배치

5)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 적용)

○ 장애아의 연령,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반을 편성·운영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누리장애아반에 일반장애아가 혼합·편성될 수 있는 반은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1개반만 가능하므로, 반 편성 후 장애아동의 입퇴소에 따라 시스템상 반배치와 실제 운영되는 반배치가 다를 수 있음.

6) 기타 지원 사항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 수당 월 20만원을 별도 지원

※ 해당 월에 입면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과 동일 적용

7) 지정절차

○ 장애이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이동복지지원법 시행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청장은 신청서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장애이동복지지원법령 및 영유아보육법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이통합어린이집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하여 장애이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함

8) 통합시설 지정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장애이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로 장애아 보육을 위한 장애아전담 교사를 채용한 시설

※ 장애이통합어린이집 원장과 장애아 보육을 담당할 보육교사는 6개월 이내에 특별직무교육(사이버 교육 포함)을 이수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한 시설
-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장애아 3인당 장애전담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1인 및 장애아 전담교사 3인중 1명은 반드시 특수교사로 배치)을 준수하는 시설

9) 지정취소

- 취소기준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취소기준과 동일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지원시설이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시·군·구에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다른 시설을 장애아 통합시설로 대체 지정할 수 있음

■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 ■

구분		지정 주체	인건비지원 (교사 1인)	보육료 지원 (장애아 1인)
1. 장애아전문지정어린이집 : 전담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 인건비 지원(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시장·군수·구청장	80%	438천원 (누리과정 438천원)
- 인건비 미지원(보건복지부 장관 미승인)		시장·군수·구청장	-	438천원 (누리과정 438천원)
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 : 통합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 인건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	80%(국공립·법인) 142.8만원(민간)	438천원 (누리과정 438천원)
3. 일반어린이집 : 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				
정부지원 시설	- 1대 3기준(0세반)		80%	418천원
	- 1대 5기준(1세반)		80%	368천원
	- 1대 7기준(2세반)		80%	304천원
	- 1대 15기준(3세반)		30%	220천원
	- 1대 20기준(4세반이상)		30%	220천원
민간보육 시설	- 1대 3기준(0세반)			보육료상한액
	- 1대 5기준(1세반)			"
	- 1대 7기준(2세반)			"
	- 1대 15기준(3세반)			"
	- 1대 20기준(4세반이상)			"

※ 장애아 종일보육아동과 장애아 방과후 보육 아동은 같이 반영성 불가
 ※ 장애아의 연령과 달리 반영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 및 시·군·구담당자의 승인에 의해 조정 가능
 ※ 또한, 장애아전문 또는 통합시설로 지정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교사대아동비율 미준수, 전담교사가 미배치되었을 경우에는 상기 표의 3. 일반어린이집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
 ※ 미지정 시설이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 장애아수(미취학, 취학장애아 포함)는 통합보육 상한(20%) 이내이어야 함
 ※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한 보육료를 지원

4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원

가. 정의

- 영아전담어린이집 : 만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나. 지원대상

- 2004년 이전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민간지정,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다. 운영기준

1) 보육아동 정원 책정

- 영아전담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가능한 2세 미만반이 2세반보다 많게 되도록 편성
- 만 2세이상반만으로 보육정원 책정을 할 수 없음(지정 취소 사항)
(연령은 '17년 1월 1일 기준으로 2세미만반은 24개월 미만 영아, 2세반은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의 영아로 함)

2) 반편성 기준

- 영아전담어린이집은 영아를 전담하여 보육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시설 정원범위 내 40%까지 유아를 보육할 수 있음

예 100명 정원 시설에서 영아 현원이 50명일 경우 3세아반 교사대 아동 비율이 1:15이므로 유아 2개반 별도 편성 가능

- 영아전담어린이집에서 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는 영아반을 우선 편성하여야 하며, 유아보육현원이 9명 미만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 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세반과 유아반 혼합 보육 가능(이 경우, 교사대 아동비율은 2세반 기준으로 적용하고 누리과정을 적용해야 함)

예 2세아 10명, 유아 5명인 경우 2세반 1개반(2세아 7명)을 우선 편성하고 남은 2세아 3명과 유아 5명을 혼합반으로 편성하여야 함

- 유아반을 편성하기 위하여 2005.12.31 현재의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증원 불인정 (기존 총정원 40%범위까지 인정)

라. 인건비 등 지원

○ 원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구 분	원 장	보육교사
지원조건	영아 현원이 18명 이상인 경우	배치 기준에 따라 정원내 소요현원에 대해 지원
지원액	월 지급액의 80%	월 지급액의 80%
현원감소시 지원 기준	영아 현원이 18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반 : 3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2명까지 지원 • 1세반 : 5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3명까지 지원 • 2세반 : 7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4명까지 지원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를 2세반과 혼합보육할 경우 영아가 50%(4명)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 •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시설(민간지정시설 제외)이 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할 수 있음

※ 민간 또는 가정 영아전담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은 퇴직적립금 적립 금지

○ 기타 지원 사항

- 조리원 1명에 대해 월 지급액의 100% 인건비 지원
- 농어촌 시설인 경우 차량운영비(월 20만원) 지원
-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 동일 적용

마. 지정 취소

○ 시·도지사는 국공립 등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영아전담어린이집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①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단, 법인(국공립) 영아전담어린이집의 지정취소사유 발생 시 다른 처분 적용

<지정취소 세부기준>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지정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②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되는 경우

※ 단, 영아전담어린이집지정시 대표자와 원장이 부부관계로, 한쪽의 사망으로 다른 한 쪽이 대표자와 원장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③ 소재지 변경 및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 단, 기존에 임대시설에서 영아전담 지정받은 어린이집이 동일 행정동 내에서 자가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음(정원 증원은 불가)

- 이 경우에도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이 있어야 하며, 영아전담에 적합한 시설 여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소재지변경 불가(부채가 자산규모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용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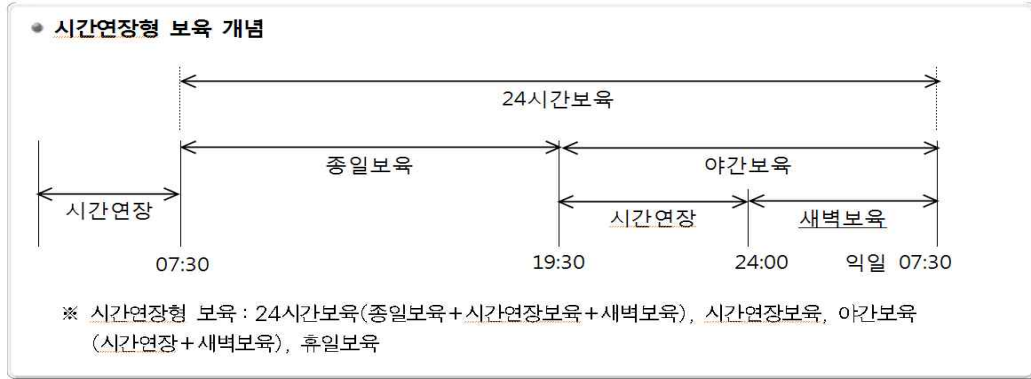
예 부채가 자산규모의 50%를 초과한 경우

- i) 건물의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한 부채현황 및 신용대출 등 금융부채를 포함한 총액이 자산의 50%를 넘는 경우
- ii) 가정어린이집인 경우는 총부채 상환비율(DTI)이 50%를 초과한 경우
(제 2금융권포함)
- iii)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건물의 담보인정비율(LTV)이 50% 초과한 경우
(제 2금융권포함)

※ 단, 국가사업 수행 관련 토지강제수용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전할 경우 소재지 변경 가능(민간사업자 재건축 등은 변경 불가, 정원 증원불가)

④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도지사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법인 영아전담시설의 법인어린이집으로의 전환
 - 신청에 의해 법인어린이집으로 전환 가능(보건복지부 사전승인). 단, 신축비 지원 시설은 개원 후 3년 이상 정상운영 이후에 전환 가능
 - ※ 민간영아전담지정시설의 경우, 신청에 의해 일반시설로 전환가능
- 지정이 취소된 경우 다른 시설을 대체 지정할 수 없음



가. 시간연장 어린이집

1) 정 의

-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2) 원 칙

- 해당시설의 종일보육 이동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간에 다른 어린이집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가능
- 원칙적으로 별도 교사를 두어야 함. 단,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을 지원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겸직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시간연장반 교사 겸임 가능
 - ※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시간연장보육교사를 겸임하는 경우 시간연장 교사인건비(월급여 형태) 지원불가
- 국공립 및 정부지원 비영리법인시설의 경우 부모의 취업 등으로 1명 이상이 보육시간 연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간연장 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시·군·구청장은 국공립시설의 운영자를 신규로 선정하거나 재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에 시간연장 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
 - 기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사 시에도 시간연장 보육을 실시한 운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시간연장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4) 인건비 등 지원

※ 기존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서 인건비(월급여 형태)를 지원받고 있는 시간연장반은 근무수당 지원으로 전환 불가하나 추가반 개설 시 근무수당 지원 가능

가)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 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정부지원시설 : 월 지급액의 80% 지원
- 직장어린이집 : 월 지급액의 80% 지원(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지원)
- 정부미지원시설 : 1인당 127.9만원 지원

※ 주간 보육교사를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할 경우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음

※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중 월 118만원 이상은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임금의 일부로 활용하고 남은 차액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퇴직적립금 등의 일부로 활용 가능
(단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 지급)

○ 시작시간(19시 30분) 이후 시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 이상(예외 : 국공립 등 정부 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원장, 대표자가 자신의 자녀(또는 손자, 외손자)를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보육을 하는 경우 인건비 산정을 위한 아동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시간연장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해당 시간연장반 전체 아동 시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예외 :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일 경우 지원(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학차량 이동시간 제외)

- 해당 시간연장반 전체 아동 시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미만일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의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

※ 지원교사 수는 시·군·구에서 판단, 2005년도까지 3명 이상을 지원받던 시설은 기존 지원교사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시간연장반을 우선편성하고, 나머지 아동으로 시간연장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

예 시간연장 보육아동이 6명(1세아 2명, 2세아 3명, 3세아 1명) 인 경우, 시간연장반 5명 편성 후, 다른 시간 연장반 편성 가능

- 시간연장 보육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매일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 시간연장 미지정시설의 경우 시설 당 보육아동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30~21: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임

나)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 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

- 시간연장반 별 월 42.4만원 지원

※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의 경우, 동일 시간연장반을 여러 명의 보육교사가 요일을 달리하여 시간연장 보육 할 수 있음

※ 단시간 시간연장반 보육교사의 보육교사 경력(자격·호봉)인정

- 시작시간(19시 30분) 이후 시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 이상(예외 : 국공립 등 정부 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원장, 대표자가 자신의 자녀(또는 손자, 외손자)를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보육을 하는 경우 인건비 산정을 위한 아동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시간연장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해당 시간연장반 전체 아동 시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예외 :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 시설)일 경우 지원(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학차량 이동시간 제외)

- 해당 시간연장반 전체 아동 시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미만일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시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의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개반까지 지원 가능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시간연장반을 우선편성하고, 나머지 아동으로 시간연장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

예 시간연장 보육아동이 6명(1세아 2명, 2세아 3명, 3세아 1명) 인 경우, 시간연장반 5명 편성 후, 다른 시간 연장반 편성 가능

- 시간연장 보육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매일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 시간연장 미지정시설의 경우 시설당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시간연장 보육 이용 아동이 있는 날에는 19:30~21:30 동안은 반드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5) 지원조건

-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원 4대 보험 가입
 - ②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 준수
 - ③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6) 경력(자격·호봉) 인정

-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채용된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정식으로 당해 어린이집에 채용된 경우만 경력(자격·호봉)을 인정

7) 정원관리 및 운영기준

-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주로 야간에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주간보육아동 정원을 채웠을 경우에도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새로 책정할 수 있음

예 정원 50명 시설에서 주간아동 50명중 40명이 가고 나면, 야간에는 추가로 40명을 더 보육할 수 있음
(연장아동 10명+야간만 이용아동 40명)

- 주간(19:30이전)에 이미 최소 4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에는 시설 정원(주간보육정원)에 포함되므로, 주간의 교사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어서 19:30이후까지 보육할 경우 19:30부터는 시간연장 보육 정원으로 간주
 - ※ 시설 내 여유공간과 시간연장 보육교사가 있을 경우 이용자 부모의 사정(야간근로 등)에 따라 시간연장보육 기준시간(19:30) 이전에도 보육은 가능하나 시간연장 보육료 기산은 19:30부터 시작
- 주간 보육정원이 미충족 되었을 경우 15:30이전에 등원하여 최소 4시간 이상 보육한 아동은 주간 아동으로 보아 주간보육정원에 포함
 - 주간 보육정원이 채워졌을 경우 원칙적으로 19:30이전에는 시간연장 보육아동을 입소시킬 수 없으나, 조기 귀가 아동이 있고 시간연장 보육교사가 근무할 경우에는 19:30이전에도 정원 외로 시간연장 아동 보육 가능(단, 주간보육료 수납 또는 지원은 불가)

8) 지정절차

-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 IX-3>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지정하고 <서식 IX-4>의 지정서를 교부
 - 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우선 지정
 -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간연장 보육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우선 지정

9) 지정취소 및 재지정

- 시·군·구청장은 시간연장지정 어린이집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①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세부기준>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지정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②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되는 경우
- ③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 ④ 기타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군·구청장은 시간연장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시·군·구청장은 지정을 취소한 경우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요건을 충족한 시설을 대체지정 할 수 있음

나. 24시간 어린이집

1) 정의

- 24시간동안(07:30~익일07:30)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 가능
- 보육서비스 개념정의
 - 야간보육 : 야간(19:30~익일07:30)에 이루어지는 보육형태
 - 24시간 보육 : 부모의 야간경제활동,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보육(19:30~익일 07:30)을 모두 이용하는 보육 형태
 - ※주간이용 어린이집과 야간이용 어린이집이 동일한 경우에만 24시간 보육료 지원

2) 원칙

- 시·도지사는 지역 내 야간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가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수요를 판단할 경우에는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반드시 협의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시도와 협의하여 지정물량을 배정
-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아동 입소 관리 등을 통해 아동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 24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아동 등록은 반드시 시·군·구에서 확인후 등록 승인하고, 주기적인 관리 실시
- 지정시설에 대해서는 일정기준에 따라 인건비 지원

3) 지정기준

- 시·도지사는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음
- 24시간 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이 수면하기에 적합한 시설(수면실 등)과 조·석식을 포함한 급간식 제공여건 및 자체 야간 보육프로그램을 구비하여야 함

4) 지원대상 및 조건

가)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 및 민간(직장, 가정포함) 어린이집 중 야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을 최대 10명 이하를 보육하고 있거나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도지사로부터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의 시간연장 보육교사(19:30~24:00)와 새벽근무 보육교사(24:00~익일07:30) 인건비를 각각 지원

※ 단, 국공립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은 야간보육에 대한 수요(병원, 3교대 근무직장 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승인하에 10명을 초과하여 보육할 수 있음

나) 지원조건 : 아래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인건비는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정부지원시설 : 월 지급액의 80% 지원
 - 직장어린이집 : 월 지급액의 80% 지원(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지원)

- 정부미지원시설 : 1인당 127.9만원(월) 지원

※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중 월 118만원 이상은 보육교사 월 임금의 일부로 활용하고 남은 차액은 사용자가 부담해야하는 4대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퇴직적립금 등의 일부로 활용(단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 지급)

○ 보육아동을 2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야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함. 단,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음(종일반 편성시는 연령에 따라 반편성)

○ 새벽근무 보육교사는 원장과 협의하에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교대 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 교대근무 형태는 원장과 보육교사가 협의 하에 결정(당일교대 또는 연속근무 후 휴무실시 등)

○ 24시간 보육아동의 경우 보육료의 200% 한도 내에서 추가비용을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음

※ 24시간 보육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 수납할 수 없음

- 보육료 지원대상자의 경우 정부지원단가의 150%까지는 정부에서 차등지원 받고, 그 이상은 부모로부터 추가 수납가능

- 보육료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가 내는 보육료(시·도지사 고시 상한액)를 기준으로 100%까지 추가수납 가능

○ 지원조건, 경력인정, 정원책정 등은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준함

5) 야간 및 24시간 보육대상 아동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영유아로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영유아에 대해 야간 및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미취학 영유아)

- 시·군·구청장은 반기별로 야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

6) 부모 등 보호자 준수사항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최소한 주 3회 이상 아동과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식으로 아동과 접촉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최소한 주1회 이상 아동을 가정에 데려가 보호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상시적으로 어린이집과 연락체계를 유지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1월 이상 아동의 보호의무를 해태하거나 연락이 안될 경우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유념

7) 24시간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

- 어린이집 원장은 24시간 보육아동 입소시 보호자의 의무사항(주3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아동 접촉, 주1회 이상 귀가,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장기간 아동 방치 시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의뢰 등), 야간 및 24시간 보육여건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보호자로부터 <서식 IX-5-3>의 이용신청서를 제출받아 비치하고, 시·군·구 승인하에 24시간 보육가능
- 어린이집 원장은 24시간 보육아동을 보육함에 있어 가급적이면 가정에서와 같은 환경(수면실 등)과 조·석식을 포함한 균형적인 급간식 제공 및 별도의 보육 프로그램(기본생활습관 형성, 가족과의 유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시행
- 어린이집 원장은 시설 내에서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8) 24시간 보육아동의 보호조치

- 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1월 이상)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였을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아동의 계속 보육여부 및 아동 복지법 제10조에 의한 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도록 조치
- 시·군·구청장은 24시간 보육아동의 관리를 위해 아동복지 담당부서와의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장기간 방치된 아동의 계속 보육 또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지역의 아동위원 또는 아동복지전문가로 구성된 관정위원회(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위원회 등 유사위원회 활용 가능)를 둘 수 있음

9)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정관리

- 시·도지사는 지역 내 야간 및 24시간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
 - 시설의 보육환경(수면실 등)과 급간식 제공여건 및 야간 보육 프로그램 등을 현장 조사를 통해 점검한 후 야간 및 24시간 보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지정
 -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직장어린이집을 우선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면실 등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비용(증개축 또는 개보수)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해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 시·도지사는 24시간 어린이집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 ①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지정취소 세부기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지정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②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되는 경우
 - ③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 ④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도지사는 24시간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자체예산으로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 냉·난방비, 야간근무교사의 조·석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다. 휴일 어린이집

1) 정 의

-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

2) 정원 책정

- 휴일 어린이집은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원래 시설 정원과는 별도로 휴일 보육정원을 책정할 수 있음

3) 인건비 지원 기준

- 지원 대상 : 국공립·법인시설(사회복지시설, 학교·종교부설 설치비 지원 어린이집 포함) 및 직장어린이집 중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 보육교사 1인당 3명 이상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보육 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 근무수당 일일 5만원 지원
 - ※ 휴일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별도 채용없이 기존의 보육교사가 순환 근무할 경우에도 휴일근무 수당을 지원할 수 있음

- 휴일 보육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 휴일보육 미지정 시설의 경우 시설 당 휴일반 2개반을 초과할 수 없음

4) 지정절차

-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 IX-3>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서식 IX-4>의 지정서를 교부

가. 정 의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은 4시간 이상(~19:30분까지)

나. 인건비 지원기준

- 지원대상 : 2004년도 3월 1일 지원 지정되어 기 지원중인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신규 지원 없음)
- 방과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50%를 지원
-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방과후 아동 20명 내지 16명을 보육할 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음
 - 현원이 16명 미만으로 감소되는 달을 포함한 익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은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
 - 반편성은 아동 3명을 기준으로 함
 - 보육교사는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 단,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 6개월 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
- 방과후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의 연계선상에서 초등학생 저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맞벌이부부 등 아동을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하여 시설 정원 범위 내에서 20%까지 보육할 수 있음
 - 단,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방과후 보육의 경우 총정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채용시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과 동일 적용

다. 방과후 어린이집 지정취소

- 시·군·구청장은 방과후 지정 어린이집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①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세부기준>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지정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②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 ③ 기타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군·구청장은 방과후 지정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라. 일반 어린이집의 방과후 보육

- 인건비 지원과 관계없이 일반 어린이집(방과후지정시설 제외)이 방과후 보육을 하고자 할 경우
 - 최소 인원(5명) 이상 종일반 보육을 지속하여야 하고, 별도의 방과후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함
 - ※ 단, 아동 5명 이하에 한하여 별도의 방과후 보육교사 채용 없이 방과후 보육 가능하도록 안내(별도의 방과후 보육교사가 없더라도 방과후 아동을 전담하는 보육교사가 있어야함)
 - 방과후 보육(일일 4시간 이상 상시재원 원칙) 아동이 원칙적으로 정원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단, 방과후 보육의 지역적 수요가 많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농산어촌 등)에는 지자체 재량 하에 정원의 20%~50% 범위 내에서 방과후 보육 가능

* 적용시기 : 2017년 3월 이용현황에 따른 기본보육료 지급시부터 적용

가.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나. 지원대상

-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

-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포함

다만,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의 장애아종일반은 제외(인건비 지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 특히,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여성농업인센터에 기본보육료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조치

<기본보육료 지원 요건 (아래 사항 모두 충족)>

- 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 ②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다른 아동 없이 원장 본인 자녀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적절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고용보험기금에서는 직장어린이집에 ①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②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

다.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기준단가)

(단위 : 원)

연령	0세	1세	2세	장애아
기본보육료(원)	395,000	191,000	125,000	402,000

라. 지원금 산정방식

- (입·퇴소아동)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
 - (입소 아동)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기본보육료 생성
 - (퇴소 아동)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기본보육료 생성
 - (계속 재원 중인 아동) 월1일 이상 출석할 경우 전액 지원(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출석 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 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환자명, 병명, 진료(입원)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면허번호, 직인 반드시 포함),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 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마. 반편성별 지원기준

- 반편성별 지원기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종일반 제외)
 - 시·군·구는 반별 최대지급인원(ex,0세반 3명) 범위 내에서 기본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퇴소로 인해 일할 계산되는 경우에는 허용된 초과보육 아동을 포함하여 지급금액이 많은 아동 순으로, 반별 최대지급 금액(혼합반의 경우 낮은 연령 기준) 한도내에서 지원
 - 생성일 당시 유효한 반에 대하여만 기본보육료가 생성

반구분	교사대아동비율(초과반영)	최대지급인원(명)	기본보육료(원)
0세반	1:3(특례지역일 경우 4명)	3	<u>395,000</u>
0, 1세반	1:3(특례지역일 경우 4명)	3	<u>395,000</u>
			<u>191,000</u>
1세반	1:5(초과보육시 1:7)	5	<u>191,000</u>
1, 2세반	1:5(초과보육시 1:7)	5	<u>191,000</u>
			<u>125,000</u>
2세반	1:7(초과보육시 1:9)	7	<u>125,000</u>
2, 3세반	1:7(초과보육시 1:9)	7	<u>125,000</u>
			0
장애아반	1:3	3	<u>402,000</u>
장애아 방과후반	1:3	3	<u>343,000</u>

바. 양육수당과의 중복지원 불가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므로, 기본보육료 신청시 양육수당과 중복지급 여부 파악하여 신청, 특히 시군구에서는 승인시 반드시 확인 후 조치
- ※ 단, 보육료, 양육수당 간 자격변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별도 지급 가능

【서비스(보육료↔양육수당) 변경 신청시 기본보육료 지원 기준】

구 분		보육료 및 양육수당	기본보육료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 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신청일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한 일수만큼 기본보육료 지원(퇴소아동 기본보육료 생성기준 적용)
	변경 신고일이 16일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월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신청한 월에 대하여 어린이집 이용 일수만큼 기본보육료 지원(퇴소아동 기본보육료 생성기준 적용)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신청일 이후 어린이집 이용 시 이용 일수만큼 기본보육료 지원(입소 아동 기본보육료 생성기준 적용)
	변경 신고일이 16일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신청한 월에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 변경 신청일 이후에 어린이집 이용 일수만큼 기본보육료 지원(입소 아동 기본보육료 생성기준 적용)

※ 서비스 변경 신청(양육수당→보육료)을 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지급 받는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보육료는 지원하지 않음

사. 지원절차

1) 이용현황 확정

-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재원아동의 이용현황(출석일수)을 전월 말일까지 확정**
- 어린이집은 회계보고 실시, 교사대아동비율 위반 여부 등을 반드시 사전 점검하여 기본보육료 생성시점(1일 0시)에 지원요건이 준수되어야 기본 보육료 지원금이 생성됨에 유의할 것

2) 지원금 생성

- (생성기준) 보육통합시스템에서 **1일 0시(말일 24시)까지 확정된 전월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기본보육료 지원금 생성
 - 어린이집 전체아동(입퇴소아동 포함)에 대한 종일, 야간, 24시간, 방과후 보육 서비스 등 이용현황을 확정
 - ※ 지원금 생성시점에 휴지, 폐지된 어린이집도 전월 이용현황이 있는 경우 생성 지급가능
 - ※ 지원금 생성은 기준은 '라. 지원금 산정방식' 참조
- (유의사항) 초과보육 허용 범위 내의 초과보육아동이 있는 반은 기본보육료 지급 금액이 많은 순서로 생성하고 지급금액이 적은 아동을 지급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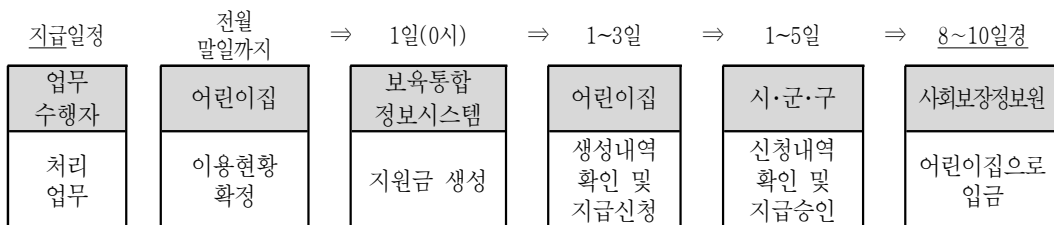
3)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 어린이집은 **매달 3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기본보육료 생성 내역을 확인하고 지급을 신청
 - ※ 신청기간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
- 어린이집 신청 기간 내에 기본보육료 **지원요건 위반을 해소한 경우 기본보육료를 재생성**하여 신청하면 신청 당월 지급 가능(기 신청한 경우 재생성 불가)
- (지원금 소급 신청) 지원요건 위반이 아닌 **이용현황 미확정 및 미신청**으로 신청 당월에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원 가능**

4) 지원금 승인(반려) 및 지급

- (승인 또는 반려) 시·군·구는 5일까지(어린이집 신청기간 3일 포함) '행정지원 시스템'에서 어린이집의 기본보육료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지급 승인 또는 반려
- (재신청) 시군구에서 **반려된 기본보육료 신청 건**에 대해 당월 시군구 확인 기간 내 **어린이집에서 재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 중 승인 시 당월 지급가능
- (지급)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 승인 후 **3~5일 이내**에 어린이집 계좌로 기본보육료를 지급
 - ※ 검토 및 정정기간은 시·군·구 근무일 기준이므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

【 기본보육료 처리주체별 업무 흐름 】



※ 지급일정(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산정 제외)은 월별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아. 지원중단

<기본보육료 지원 요건 (아래 사항 모두 충족) >

- 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 ② ‘충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 지원요건 ①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전체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달부터 지원
- 지원요건 ②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전체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달부터 지원
 - 단, 지원요건 ②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한 어린이집이 위반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사를 채용한 경우 지원 중단된 해당월 기본보육료는 익월에 소급 지원 가능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기본보육료 지급기준일(1일 0시)에 교사 대 아동비율이 위반 상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어린이집은 기본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해당 원장이 교사 결원 발생일부 1개월 내에 교사대 아동비율을 정상적으로 맞추어 익월 신청기간 내에 기본보육료 재생성 후 신청할 경우 소급 지원가능
 - ※ 교사 결원발생일부 1개월 이내의 의미 : 결원발생일은 교사의 퇴직일을 의미하며 교사가 15일에 퇴직시 다음달 15일까지 충원해야 함
- 지원요건 ③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전체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고, 익월 신청기간 내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면 지원중단월의 기본보육료를 소급 지원
- 지원요건 ④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시·군·구는 운영정지나 폐쇄가 확정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해당월 기본보육료는 운영정지일 또는 폐쇄일 이전일까지만 일할계산하여 지원
 - ※ 행정처분으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및 폐원이 결정된 경우, 시·군·구 담당자는 행정지원시스템의 [지도점검 관리]에서 해당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일자를 매월말일 이전에 처분확정(입력)하여야 기본보육료가 자동 산출되므로, 행정처분 일자 등 시스템 입력관리 철저
 - 예시** 4월 5~10일 운영정지(반드시 시스템 입력)될 경우, 4월에 생성된 기본보육료는 모두 지급하고, 5월에 생성된 기본보육료는 1~4일, 11~말일까지 지급

자. 환수

- 기본보육료의 지원요건을 위반하거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제18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교부한 보조금(기본보육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래와 같이 환수
 - (환수대상)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지원받은 기간의 기본보육료
 - (환수금액) 해당 어린이집에 교부한 총 보조금(기본보육료=총 아동 수×보육료 단가) 중 일부인 위반 사항이 발생한 반에 지원된 기본보육료만 환수
 - ※ 단, 지원요건 ④(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에 해당함에도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운영정지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지원된 보조금(기본보육료) 전부를 운영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수

가. 대상시설

- 정부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시·도지사가 지정한 정부지원시설에 한함
-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나. 지원규모

- 개소당 연 240만원(월20만원)을 지원

다. 지원방법 : 반기별로 분할 지원

- 지자체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등을 조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가능

라. 지원절차

- 지원대상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표준보육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차량운영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어린이통학 버스신고필증을 별도 보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9인승 이상의 경우에 한하며,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로 지정을 받아야 함
 -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
 - ※ 「도로교통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점검을 통하여 차량운영비의 적정 집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원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된 차량운영비를 전액 환수

9

교재·교구비 지원

가. 대상시설

- 2016년 12월말 현재 평가인증을 받고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지원시점까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중에서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제외
 - ※ 지자체 지원시점에서 평가인증 취소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기준

- 개소당 평균 100만원/년
 - 지자체는 예산범위, 지원시점의 어린이집 현원 및 평가인증 시기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지원액 등 지원기준을 조정하여 지원 가능

다. 구입대상품목

- 영유아 보육(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과학 활동, 음악 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구입
 - ※ 표준보육프로그램 교재 구입 지원 가능
 - ※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등 영유아용 교재교구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시·군·구에서 자체 판단하여 지원 제외

라. 지원절차

- 각 시설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재 교구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교재교구 구입영수증 등 교재교구 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 보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제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점검시 교재교구비 지원이 적정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원기준을 위반하였거나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재교구비 지원액을 전액 환수
- 시·군·구에서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교재교구비 연중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음(12월에 일괄신청 및 일괄지원 지양)
 - ※ 재원아동 중 0~2세 보육아동 수(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여부 포함)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가능

가. 사업개요

1) 목적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및 어린이집에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도모

2) 주요내용

- 시설 기능보강비는 상반기 중에 국고보조 및 착공이 이루어짐으로써 연내 개원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추진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부지확보를 통한 시설 신축방안 이외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매입 또는 기부채납,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국공립전환 등 다양한 확충방안 지속 추진
- 시설 신축 또는 증개축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기획 및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련 전문가의 건축 설계 자문 등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
-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 중인 시설 및 최근 3년('14~'16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을 할 수 없음
 - ※ 단, 기존 시설 매입·리모델링 등을 통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지자체 지원시점에서 행정처분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하여 개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

3) 흐름도

- 사업계획서 제출(전년 3월) → 현지점검(전년 5~6월) → 가내시 통보(전년 10월)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전년 12월) → 국고보조금 신청(당해연도) → 국고보조금 교부(당해연도) → 사업집행

- 그 밖에 사업 포기등으로 예산 여력이 생길 경우 추가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지원대상 및 내역

1) 어린이집 확충

(가) 국공립시설 신축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함
-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동주택단지(500세대 이상),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산업단지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국방부 군관사지역,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 뉴스테이(New Stay, 기업형 임대주택) 단지 등에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 구체적인 국공립신축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시 반영

- 기존 국공립시설을 이전하거나 대체하여 신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나, 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지원

※ 단,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은 정원 증가없이 이전 또는 대체신축비 지원 가능

(2) 지원규모

- 국공립시설 신축은 개소당 330㎡까지 지원하되, 예산범위내에서 515㎡까지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 지원단가 : 1,270,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국비최대 지원액 : 327,025천원

(3) 고려사항

- 읍·면·동 통폐합 및 기능전환에 따른 유휴공공시설과 시·군·구 읍·면·동 청사 신축·증개축 시 어린이집을 복합 설치하도록 노력
-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정비 조성사업에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도시공원안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적극 활용하여 적정한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
- 장애아보육은 취약보육임을 감안하여 국공립으로 장애전문시설을 적극 설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적극 활용하여 기부채납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노력

(나) 기존 시설의 국공립 전환 등

(1) 지원대상

-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또는 기존건물을 매입·기부채납받거나 매입·기부채납 받은 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 ※ 신축부지 확보가 곤란하거나 관내 어린이집이 많아 추가로 시설확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이 아닌 기존건물을 매입 또는 기부채납 받거나 매입 또는 기부채납 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하며, 이 경우에도 신축비 지원 가능(예 : 동사무소, 학교 등 공공기관 리모델링 등)
 - ※ 기부채납의 경우 기존 운영자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

(2) 지원내용

- 건물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국비지원한도액(327,025천원)까지 지원 가능

(3) 고려사항

- 농어촌 등 열악한 민간시설을 우선 매입하여 국공립시설로 전환
- 민간시설 매입시 국민연금기금('94~'97년)을 받아 설립한 어린이집을 우선 검토
-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어린이집 분포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확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축보다 기존 시설 매입·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 전환을 적극 활용토록 노력

(다) 무상임대 방식의 국공립 전환

(1) 지원대상

- 공동주택내 의무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의무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2) 지원규모

- 시설 유형별 지원액 범위내에서 전문가의 공사견적가 기준으로 지원
- 최대지원액 : 50,000천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3) 고려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존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국공립시설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적극 협의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함
-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내 어린이집을 우선함
-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전환 후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 또는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법 제24조 제2항 단서 3호)
- 시·군·구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0호의 규정이 개별공동 주택관리규약에 반영되어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0호 :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 시·군·구는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협의 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 세대주를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제3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전환 후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 또는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법인)에게 위탁 가능(법 제24조 제2항 단서 2호)

(라) 개원 예정인 국공립시설에 기자재 구입비 지원

(1) 지원대상

- 17년 중에 준공 가능하거나,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 리모델링 또는 민간시설 매입 경우 사업비와 동시 신청 가능
 - ※ 신축의 경우 착공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2) 지원단가(국비, 지방비 포함)

- 신축, 전환, 무상임대 등 : 10,000천원/개소
 - ※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3) 고려사항

-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 CCTV, 통학차량안전용품 등을 구매하며, 차량구입비, 시설 공사비로 사용 불가
- 민간어린이집 매입 또는 기존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경우 당초 사용하던 기자재 재이용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되, 추가적으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마) 장애아전문시설 신축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장애아전문시설
-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건물을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사회복지법인이 부지를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국고보조금 지원대상후보자로 선정되어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함
 - ※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거나 부지를 미확보하였다더라도 부지 소유주에 부지사용승낙서 등을 구비한 개인도 가능하나 대상자 확정 후 예산교부 신청시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와 재산을 출연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되어야 함
-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지원대상 후보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현지점검 후 최종 결정
- 시·도에서는 관내 시·군·구별로 보육수요 및 장애아전문(통합)시설 운영현황을 감안하여 추천하되, 전문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천
 - 단, 최근 3년이내에 전문시설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함
 - ※ 특별한 사정 : 갑작스런 장애아 보육수요 증가, 기존 장애아전문시설 폐·휴지 등

(2) 지원규모

- 개소당 396㎡까지 지원하되, 예산범위내에서 515㎡까지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 지원단가 : 1,270,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 국비지원한도액 : 327,025천원

(3) 고려사항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함
- 해당지역의 건축제한 여부, 부지의 재산권 행사 하자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검토하여 시설 신축에 따른 제반문제를 사전에 제거
 - ※ 특히 법인기본재산이 근저당 설정 등 부채가 있을 경우 신축비를 지원할 수 없음

- 시설의 입지조건, 용도별 법정규모, 아동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보육에 적합하게 설계·건축되어야 하며, 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
 - ※ 어린이집의 설치지역이 보호자·아동(개별) 통원이 어려운 지역이나 위험시설 인접지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고지원에서 제외
- 시·도에서 어린이집 신축계획이 확정될 경우 별지 교부신청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사업이 조기에 수행되도록 하되, 공사내역서, 설계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

□ 국공립장애아전문시설 설치 절차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절차와 동일

□ 사회복지법인 장애아전문시설 설치 절차

- 국고보조사업자 조사계획 시달(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
- 조사 실시(시·군·구)
 - 사업자 신청 공고(2주 이상)
 - *사업자 공고 시 지자체 홈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정보매체를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고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 신청 접수(세부 사업계획서 3부 제출)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드시 공개 경쟁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
 - * 기존 어린이집 운영 및 법인시설의 중복 지원 지양
 - * 시·군·구의 사업대상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부지 변경은 불가
 - 선정 당시와 상황이 변경되는 것으로 상대비교에 의한 공개 경쟁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대상자 선정시 부지 등 사업추진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민원 소지 방지)
- 조사결과 보고(시·군·구→시·도→보건복지부)
 - 사업계획서, 현장 확인 결과, 검토 의견 등 첨부
- 현장점검 실시 및 최종사업자 선정(보건복지부)
- 확정내시
- 국고보조금 교부
 - ※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별지로 첨부한다.
 - 영유아 현황(읍·면·동 기준, 영·유아 구분)
 - 기존 어린이집 현황(읍·면·동 기준, 정원·현원, 영·유아 구분)
 - 운영계획(부지확보, 정원, 보육교직원 수 및 채용계획, 개원 예정일 등)
 - 건축설계도, 공사일정 및 비용 산출 내역
 - 놀이시설, 교재·교구, 장비 등 제반 설비 구입계획 및 산출내역
 - 총 재정소요 산출내역 및 조달계획
 - 법인재산 출연 계획(증빙서류 포함)
 - 국고 보조금 조건의 이행 여부
 - 기타 국고보조금교부에 필요한 서류

2) 어린이집 기능보강

(가) 증·개축비

(1)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 중 증·개축이 필요한 시설

- 농어촌지역, 저소득밀집지역,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공단 인근 지역의 영세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음

(2) 지원내용

- 동일 부지 내에서 보육환경 개선 등 보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의 증·개축비를 지원(창고 증축 등 제외)

(3) 지원규모 및 단가

- 개소당 132㎡까지 지원하며 증·개축 면적에 따라 지원
- 지원단가 : 751,440원/㎡
※ 국비최대 지원액 : 49,595천원, 설계용역비는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4) 고려사항

- 증축의 경우 기존건물의 안전도 등을 면밀히 검토
- 개축의 경우 부분개축을 지양하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여 전체적인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
- 지원대상시설 설치 연도, 지원횟수, 시설의 자체 환경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증개축 대상시설 선정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직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선정할 수 있음
- 정원이 120명 이상인 경우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증축비 지원은 지양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시설에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함

※ 특별한 사정 :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이하 시설, 석면함유건축물 판정 등

※ 최근3년이내 : 2014년 이후(포함) 지원시설

- 시설 증·개축시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법령, 소방법령 등 각종규정 준수 여부와 영유아보육법령상 설치 기준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

※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부록 참고)

- 증개축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시설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

(나) 시설 개·보수비

(1) 지원대상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중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 특히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지원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국고 지원 시설

- 어린이집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우선지원
 -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시설 안전 점검시“보수” 이상의 판정을 받은 경우
 - 석면안전진단 결과“석면함유 건축물”로 판정을 받은 경우
- 농어촌지역, 저소득층밀집지역, 공단인근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등을 우선 지원
- 실내 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이 공기질 측정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 어린이집에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함

※ 특별한 사정 :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 이하 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 필요시, 석면함유건축물 판정 등

※ 최근3년내 : 2014년 이후(포함) 지원 어린이집

- 개보수 대상어린이집 선정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직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선정할 수 있음
- 개보수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어린이집은 시장·군수·구청장 홈페이지 등에 공개

(2) 지원규모 및 단가

- 시설의 규모, 개·보수의 필요 정도에 따라 실제 개·보수 금액을 지원하되 관계 공무원 확인 후 결정
- 지원단가 : 30,000천원/개소당(국비, 지방비 포함)

(다) 장비비

(1) 지원대상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중 장비비가 필요한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국고 지원 시설

- 장비 노후화 및 보육아동 증가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농어촌지역, 저소득층밀집지역, 공단인근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등을 우선 지원
- 실내 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 시설이 공기질 측정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2) 지원단가
 - 2,000천원/개소당(국비, 지방비 포함)
- (3) 장비내용
 - 내용 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단가 5만원 이상인 물품
 - ※ 안전용품(소화기, 가스누출탐지기, 화재탐지기 등), 급식용품(조리기구, 자외선 살균기 등), 사무용품(복사기, 컴퓨터, 프린트 등), 실내공기질 개선물품(공기청정기 등), 기타(손씻기 시설 등)
 - 통학차량의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어린이집 CCTV설치비 등 가능
- (4) 고려사항
 - 영유아의 안전과 급식개선을 위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 '06년도 표준보육행정전산망 및 급식실태 개선을 위해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한 장비비로 구입한 장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

3) 장애아시설 기능보강

(가) 목적

- 「장애인차별금지법('08.4.11 시행)」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어린이집의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도모

(나) 시설 개·보수

(1) 지원대상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중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
 -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각종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 제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국고지원시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비, 장애아 개보수비 지원 어린이 집에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함
 - ※ 특별한 사정 :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이하 시설, 석면함유건축물 판정 등
 - ※ 최근3년 이내 : 2014년 이후(포함) 지원시설

(2) 지원단가

- 30,000천원/개소당(국비, 지방비 포함)

(3) 고려사항

- 개·보수비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및 동법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을 위해 지원

■ 영유아어린이집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주출입구	장애인 주차장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내부 출입구	내부 복도	내부계단, 승강기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등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이동관련시설 (영유아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부록 참고) 참조

(다) 장비비

(1) 지원대상

- 장애아전문 또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중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대상 우선 지원
 ※ 동일 조건일 경우 장애아 현원이 많은 경우 우선 지원

(2) 지원단가

- 3,000천원~4,000천원/개소당(국비, 지방비 포함)

(단위 : 천원)

구분	장애아 현원	
	20인 미만	20인 이상
지원단가	3,000	4,000

(3) 장비내용

-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 해소 및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 이동·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이동용 보조기구
 - 어린이집 내 학습시설, 화장실, 식당 등 모든 공간에서 이동·접근에 필요한 보조기구 및 이동수단 등
 - 학습참여 지원기구 :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도구 등
 - 의사소통 지원기구 :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 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 변환출력기 등
 - 기타 원활한 학습 수행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측정검사도구 및 치료 지도자료, 안전용품 등
- *내용 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단가 5만원 이상인 물품

다. 사업수행 절차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서식 IX-6, 8>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내 보육업비를 일괄 작성하여 '17년 상반기 중에 신청
 - 보건복지부는 확정 내시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지방비 확보 등 지방자치체의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단기간에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시·도로 변경 내시 할 수 있음
- 보조사업계획(사업변경 포함)에 대한 사업자의 수행능력과 타당성·효율성 등을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기재
- 시설 신축 및 증개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은 사전에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무허가건물 여부와 건축가능 여부 및 건축규모 등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시설의 건축규모는 보육수요·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신청

2) 교부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

사 업 별	신청기간	제 출 서 류
※ 공통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1부 : <서식 IX-6> □ 기능보강사업 신청내역서(총괄표) : <서식 IX-7>
시설 신축·리모델링, 매입 및 증개축비	<u>2017. 6월말까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신축·리모델링·증개축 계획서 <서식 IX-8, 서식 IX-10> ① 시설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신축 계획서, 사업자 조사표<서식 IX-9, 서식 IX-9> - 기술직공무원 또는 건축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운영하고 있는자의 설계검토 의견서 1부 (시·도 보관)<서식 IX-11> ② 민간시설 및 기존건물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매입계획서, 사업자 조사표<서식 IX-8, 서식 IX-9> -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사본 각 1부(건물, 토지분 매입가격 구분표시 된 것) - 리모델링 필요시 기술직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공사견적서 1부.(시·도 보관) ③ 공동주택 및 기존건물 리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계획서, 사업자 조사표<서식 IX-8, 서식 IX-9> - 기술직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공사견적서 1부(시·도 보관). ④ 증개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개축 사업 계획서<서식 IX-10> - 기술직공무원 또는 건축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운영하고 있는자의 설계검토 의견서 1부 (시·도 보관)<서식 IX-11> <p style="margin-left: 40px;">※ 설계도 등 기타 서류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검토 후 각 1부씩 보관</p>
기자재구입비	<u>2017.12월까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재 구입 계획서<서식 IX-14> ① 신축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계약서 또는 감리원·공사감독관 공정확인서 - 공사현장 사진 1부. ② 리모델링 또는 민간시설 매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모델링 또는 민간시설 매입 사업비 신청시 동시 신청 가능(단, 기존 기자재를 매입할 경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사본 각 1부
시설 개·보수비	<u>2017. 6월말까지</u>	○ 어린이집 개·보수 계획서 <서식 IX-12>
장비비 지원	<u>2017. 6월말까지</u>	○ 어린이집 장비비 계획서<서식 IX-13>

3) 국고보조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서식 IX-15>

※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국고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할 경우 국고보조가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참조)

- 사업추진방법(예 : 신축 → 민간매입, 기부채납, 리모델링 등),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정원, 면적 등), 비용분담내용 등

- 시·도지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를 접수 받아 설계도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의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만을 보고함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 지자체부담조정에 따른 사업비변경

4) 건축설계 자문실시

○ 국공립시설과 장애아전문시설 신축 및 증개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건축가협회 보육분과위원회 위원 등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건축설계 자문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해 노력

라.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수행실적 보고 및 정산

1) 수행실적 보고

○ 국고보조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비 집행 및 사업 추진현황을 매반기마다(6월, 12월) 보건복지부에 제출

○ 보건복지부는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여 단기간 착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대상 :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 국공립시설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장애아전문시설, 신축, 증개축, (장애아시설)개보수, (장애아시설)장비비

2) 정산

- 장애아전문신축 사업후보자 및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지원대상 시설 선정 시 사업 계획서에 자부담 금액이 포함된 경우 사업완료 후 정산시에는 당초 사업계획서의 비용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 처리

예시 ① 장애아전문 사업후보자 선정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비용분담 내역

- 총사업비(533,200천원) : 국비(216,600천원), 지방비(216,600천원), 자부담(100,000천원)
- 분담비율 : 국비(40.7%), 지방비(40.7%), 자부담(18.6%)

② 사업 완료 후 정산처리

- 총사업비 : 490,000천원
- 총사업비 감소로 분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정산
 - 국 비 : 490,000천원 × 40.7%=199,430천원
 - 지방비 : 490,000천원 × 40.7%=199,430천원
 - 자부담 : 490,000천원 × 18.6%=91,140천원
- 국비집행반납처리 : 17,170천원

3) 선금 지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27호(2009. 3.13.)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선금지급이 가능하며, 총 공사비 지급은 선금의무지급률에 따른 선금과 공정률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 의무적 선금율

공사금액	비 율
100억원 이상	30%
100억원~20억원	40%
20억원 미만	50%

※ 선금지급이 가능한 경우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 중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어린이집의 폐지 시 설치비 등 반납

1) 대 상

- 사회복지·학교·종교시설에서 부설 설치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던 어린이집 등이 「영유아 보육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폐지하는 경우 시설설치비를 반납
- 교재교구비를 지원받아 교재교구를 구입한 시설의 폐지시 교재교구를 반납하여 타 시설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반납기준

- 시설공사비(칸막이, 보일러 등)는 내용연수 10년을 기준으로 1년에 10%씩 정액 감가 상각하여 반납 받음
 - * 단, CCTV의 경우 내용연수 3년을 기준으로 기간에 비례하여 반납받음
- 교재교구가 파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내용연수는 2년을 기준으로 함

☑ 참고법령(보육사업 안내 부록 참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 '09.4.11부터 : 장애아전문시설
 - '11.4.11부터 : 100인 이상 국공립·법인어린이집
 - '13.4.11부터 : 국공립·법인어린이집
-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별표1의 대상시설(영유아 어린이집 포함) 중 '09.4.11이후 신축·증축·개축 시설물 대상
 - 어린이집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98.4.11 시행) 기 적용 대상

●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

- '11년부터 연면적 430㎡ 이상인 모든 어린이집 적용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PM10(ug/m³) 100 이하, CO²(ppm) 1,000 이하, HCHO(ug/m³) 800 이하, CO(ppm) 10 이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기관 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함
- 이 법 시행(2008.1.27)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1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가. 추진배경

- 이용할 어린이집이 없으나 보육수요가 존재하는 농어촌 지역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

나. 사업명 및 주관기관

- 사업명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도/ 시·군)
 - 지자체 농정부서에서 주관, 지자체 보육부서에서 협조
- 사업담당 : 농림축산식품부(농촌복지여성과)

다.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영유아보육법 제52조(도서·벽지·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 농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촌 여성의 복지증진)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 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라. 정의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란 농어촌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중 3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함

마.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3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명칭은“○○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함
- 분원시설로 운영할 경우 상시 영유아 3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분원”으로 하여야 함

- ◇ 분원시설 :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고 본원의 원장이 분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설
- ◇ 본원시설 : 본원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국공립어린이집

바. 지원보조

- 시설비 : 국비 70%, 지방비 30% 지원
- 운영비 : 국비 100% 지원

사. 지원자격 및 요건

-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대한“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군
 - 시장·군수는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1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 마을회관 및 기타 유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신축할 수 있음

아. 설치절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 영유아 수가 20인 이하인 농촌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 신청 가능

자. 배치기준

-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한해 설치 지원
 - 단,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설치가능

차. 시설의 위탁운영 등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25조

- 운영방법
 - 보육교직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음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분원형태로 지정한 경우, 별도의 위탁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위탁 운영시 유의사항
 -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함
 - 기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기준을 준용함

카. 설치 및 지원기준

- 1) 어린이집의 입지 조건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함
- 2)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의 3호 규정에 의함
- 3)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현황 보고
 - 매 분기말 익월 1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진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함
- 4) 설치비 지원
 - 개소당 지원 단가 : 152백만원(지방비 포함, 국고보조율 70%)
 - ① 3~15인 이하 어린이집 설치
 - 리모델링·신축비 : 64.35㎡이내(3인 이상 15인 이하 어린이집으로 제한), 81,725천원 (지원단가 1,270,000원/㎡ 적용)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 : 33㎡, 20,000천원(지원단가 606,060원/㎡ 적용)
 - 기자재·장비구입 : 29,000천원
 - 차량구입 : 22,000천원/1대(15인승 이하 봉고)
 - ※ 어린이집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16~20인 이하 어린이집 설치

- 리모델링·신축비 : 85.8㎡이내(16인 이상 20인 이하 어린이집으로 제한), 108,966천원
(지원단가 1,270,000원/㎡ 적용)
- 기자재·장비구입 : 22,000천원
- 차량구입 : 22,000천원/1대(15인승 이하 봉고)
※ 어린이집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운영비 지원

○ 개소당 최대 13,700천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1인기준) : 10만원/월
※ 시설당 최대 4명까지 지원하되, 보육교사, 취사부, 원장 순으로 지원
- 보육교사 교통비(1인기준) : 10만원/월
※ 시설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하되, 보육교사에게만 지원(보육교사 겸임 원장은 지원 제외)
- 교재·교구비(1개소)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500천원~1,000천원/1회
※ 신청월 상시 영유아 수가 3~5명일때는 500천원, 6~10명일때는 700천원, 11~15명일때는 1,000천원을 지원
- 프로그램개발비(1개소) : 연 2,100천원 범위내에서 지원
- 냉·난방비(1개소) : 연 1,20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200천원/월 이내 원칙)
※ 단, 냉난방비가 센터 여건에 따라 월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전체 1,200천원 범위내에서 집행 가능

타. 어린이집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 원칙

(1) 어린이집 운영규정

- 어린이집 원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2) 보육대상

- 만 0세~만 5세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함

(3) 어린이집의 반편성 및 혼합반 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 지역에 한해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반편성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영아 연령전체 (0~2세) 혼합반구성과 가정어린이집 기준에 준하여 만2세아와 유아의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음. 단, 교사 대 아동비율은 최저연령 기준에 따름

* 도서·벽지 지역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지역

-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 지역에 한해 전체 보육아동 수가 5명 이하로서, 교사 채용 등을 고려하여 반을 구성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 연령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음

* 도서·벽지 지역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지역

- 기타 반편성 및 혼합반 운영에 관한 사항은 II.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용

* 2017년 보육사업안내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17년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서를 적용할 수 있음

(4) 입소순위

- 보육사업안내의 입소우선순위를 적용함

(5) 기타 보육운영시간, 보육교사의 배치 및 근무시간 등 운영 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및 2017년 보육사업안내 기준을 준용함

(6) 보육교직원

- 어린이집 원장

-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한 사항을 갖추어야 함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이 보육정원 20명 이하임을 감안하여,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분원의 경우, 분원 원장은 분원에 대한 책임을 짐

- 보육교사

-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한 사항을 갖추어야 함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이 분원으로 지정된 경우, 분원의 보육교사 중 1명을 분원 운영을 지원하는 '분원운영지원교사'로 지정할 수 있음
- 분원운영지원교사는 분원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원 원장과 협의하여야 함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 사업대상자가 10인 이하인 경우에도 직접 운영 또는 분원 운영 모두 가능

◇ 본원 원장(국공립어린이집)의 책임

- 본원운영지원교사 및 본원 보육교사의 임면
- 안전 및 위생관리 감독
- 취사부 및 보육보조인력의 임면
- 예·결산 회계

◇ 본원 운영지원교사의 자격 및 업무

- '본원운영지원교사'는 다음의 1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6개월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2년 6개월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 '본원 운영지원교사'는 본원 내에서 일반 보육교사의 아동보육업무에 더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일과운영 계획
 - 보육실 환경 구성
 - 조리실 관리
 - 교재교구 선정
 - 부모상담
 - 급간식 식단 운영
 - 그 외 보육활동과 관련한 모든 업무

(7)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 보육료에 관한 사항은 2017년 보육사업안내 기준을 준용.

12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가. 추진배경

- 보육시설이 없거나 접근성이 부족하여 보육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놀이교실을 지원하여 탄력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나. 사업명 및 주관기관

- 사업명 :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도/ 시·군)
 - 지자체 농정부서에서 주관, 지자체 보육부서에서 협조
- 사업담당 : 농림축산식품부(농촌복지여성과)

다.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촌 여성의 복지증진)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 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라. 정의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이감·도서 대여, 육아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마. 지원보조

-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인건비, 차량임차비, 기자재 구입비 등) : 152백만원
 - 국비 70%, 지방비 30% 지원

바. 지원자격 및 요건

- 이동식놀이교실 운영을 하고자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도 및 시·군

사. 운영기준

1) 사업대상

-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 영유아 및 학부모

2) 운영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음
- 거점지역을 설정하여 단체 보육 활동을 하거나 아동 수가 적은 지역은 개별 가정을 방문함
- 월별 운영계획을 수립 후 정기적으로 방문함
- 연령대별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놀이프로그램 및 동화책 등을 준비하고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활용함

3) 종사자 배치 및 근무시간 등

- 놀이교실 운영은 보육 전문 인력 1인 이상과 지원인력 1인 이상으로 운영함
- 놀이교실 종사자는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 보육전문인력은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놀이교실 등을 운영하며 놀이교실 내 상호작용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문제를 상담할 수 있음

4) 사업내용

- 놀이감 및 도서 대여
- 영유아를 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5) 운영현황(사업평가 등) 보고

- 시·도지사는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사항, 놀이기구 구입현황(가격, 일자, 사진, 관리사항 등), 예산집행 현황, 특기사항 등 운영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함(사업종료 2개월 내)

-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함(사업종료 2개월 내)

아. 기 타

- 놀이감 등의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유지·보수 하여야 함
- 놀이교실 운행 및 교육활동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함
- 놀이차량 운영 책임자는 놀이교실 이용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른 배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함
- 놀이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응급상자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놀이차량 종사자는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함
- 놀이차량에는 일일 차량안전점검표를 비치하여야 함
- 이동식놀이교실 지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유하여 지속적으로 농촌지역의 취약한 보육여건을 개선하는데 활용 또는 인근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이관·활용도 가능

가. 목적

- 농촌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6년부터 이관

나. 지원내용

- 농촌 등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게 개인별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 지원

다. 지원대상

- 농촌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 보고된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받을 받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실 근무일수)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

※ 월급여 시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다만,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주 5일 이내 휴가, 5일 이내의 주중 법정보수교육 참석일도 근무한 일수에 포함 가능, 단,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원장이 매월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을 통하여 신청한 보육교사

※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시간 연장형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치료사의 경우는 담임교사 여부와 관계없이 월15일(실 근무일수) 이상 근무시 지급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는 농촌지역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15일 이상 실 근무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 보육교사 보조

라. 지급 방식

- 원장이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매월 7일까지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지급

- 원장은 보육교사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시·군·구에서는 익월 7일까지 집행하되, 12월분은 23일까지 신청하고 12월말까지 집행
-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 소급 신청(신청월 포함 3개월)
-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 ※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정부가 농촌 지역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지급 상한제 적용 제외)

마. 지원 형태

- 지원기준 : 지방재정 자립도에 따라 차등지원
 - 국고 40~60%, 지방비 40~60%

※ 농어촌 등의 범위(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2537호, 2015. 7. 3)

1.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농어촌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 녹지지역
 -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의한 준농어촌
 - *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 고시된 농촌지역 포함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 지원내용

-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 교사에게 월 22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17.1월~)

2)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받을 받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월급여 시간연장반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월 15일 :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주 5일 이내 휴가, 5일 이내의 주중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은 근무한 일수에 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시간 연장형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지자체 지원 포함)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사람

○ 지원 제외 대상자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3) 지급방식

-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시·군·구 승인 기간 조정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정부지원 대체교사 사업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해당 센터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소재한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급
-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 가능
-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의 적정 청구 등을 지도·감독
 - ※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정부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 수당도 아님(인건비 지급 상한제 적용 제외)

나. 교사겸직원장 지원

1) 지원내용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월 7만 5천원 지원('17.1월~)

2)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 월 15일: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주 5일 이내 휴가, 5일 이내의 주중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은 근무한 일수에 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3) 지급방식

-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원장 통장으로 입금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시·군·구 승인 기간 조정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 시장·군수·구청장은 적정 청구·지급여부를 지도·감독

가. 지원 내용

- 담임교사가 연가(주중 5일/인)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석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 교사를 파견
 - 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하는 등 특정 시설이나 보육교사에 대체교사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시·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분할사용 원칙적 불가, 토요일은 미지원,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 (이월불가)
 - ※ 대체교사는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
 -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파견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나. 지원대상

- 현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현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우선 지원
 - 시·군·구에 임면 보고된 자에 한해 임면보고일 기준으로 근무기간 계산
 - ※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소규모 어린이집의 장기근속자 우선 지원
 - ※ 보육교사가 5인 이하인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

다. 지원 사유 및 지원일수

- 보수교육(주중 1~5일, 최대 2주 이내) 참석, 결혼 등 연가(주중 1~5일), 긴급사유(아동학대로 인한 긴급지원 등 보육 수요 발생)발생시 지원
- 연가,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교사 대체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일수 다양화
 - 지원 사유에 따라 주중 1~5일 이내(최대 2주)
 - 보수교육 참석시 : 주중 1~5일 이내(최대 2주)
 - 연가 사용시 : 주중 1~5일 이내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구분	우선 순위	지원 내용	지원 기간	비 고
상시	1 (교육)	보수(직무·승급) 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주중 1일~5일 (최대 2주)	사후 증빙(영수증)자료
	2 (연가)	연가 (결혼 우선 지원)	주중 1일~5일	사전 결혼증빙자료
긴급	최우선 (긴급)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최우선 사유	수시 접수

라. 지원방식

-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교사 신청하되, 보수교육 사유, 긴급사유에 따른 요청시 상시, 유선·Fax 등을 통해 신청 가능

과견시기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신청시기	전년도 12월말	2월	4월	6월	8월	10월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어린이집 확정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에 통보 및 대체교사 과견

마.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연가, 시도별 보수교육 운영상황 등을 고려,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고정 고용보다는 탄력적 채용 운영
 - (자격)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 ※ 장애 보육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등 자격 소지자를 우선 채용
 - (근무) 주 5일 근무
 - ※ 채용된 대체교사는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대체교사 과견수요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운영가능
 - (지원단가) 월 1,774천원(교통비 10만원, 퇴직적립금 8.3만원,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17. 1월부터 적용)
 - ※ 대체교사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월급제가 아닌 교사채용 가능
 - ※ 시·도별 퇴직적립금 적립 규모에 따라 추가로 퇴직적립금 적립이 필요한 시·도에서는 예산현황 등을 감안하여 퇴직적립금 추가 지원(적립) 가능
 - ※ 2013년 3월 이후 대체교사를 도서·벽지·농어촌 지역(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인정이 가능한 지역) 어린이집으로 과견함에 따라 월10만원을 넘는 교통비 발생분에 대해서는 초과지급(월10만원 한도 내) 가능

- 대체교사 사업 운영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비 집행
 -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3% 내외에서 운영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채용된 대체교사의 교육, 경력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실시
 - 대체교사 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관리자에 대해 수당 지급 가능

바. 유의사항

- 대체교사는 보육교사의 법정연가 보장과 교사의 부재시 보육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동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됨

1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가. 사업 대상

○ 민간·가정 어린이집

- 영아반* 3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정원충족율 80% 이상인 어린이집

* (영아반) 0세·1세·2세아반, 혼합반(0·1세), 혼합반(1·2세)

※ 신청 어린이집 수가 적은 경우 정원 충족율 80% 미만도 선정 가능

(이 경우에도 영아반 3개 이상, 평가인증 유지 필수)

※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의 경우 전체 정원에서 시간제 정원은 제외하고 적용

(예시 : 총 정원 80인 기관에서 시간제 1개반(5명) 운영시 ⇒ 정원 75명으로 간주)

○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 장애아 현원 6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지원 제외 대상

-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지도명령 제외)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 또는 행정처분이 예정된 어린이집 (다만,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행한 어린이집은 제외)
-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17년에 선정된 어린이집은 제외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업기간('17.1. ~'18.2.) 중 지속 지원 가능

나.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보조교사와 원장간 근로계약 체결하되, 1일 4시간(주 20시간) 근무, 월 811천원(4시간 기준)* 지급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은 어린이집 부담

- 어린이집과 보조교사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 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놀이·학습·급식 등 보조업무 수행

- 보조교사는 담임교사 업무부담 경감이라는 법령 및 사업취지를 고려, 특정반 담임교사로서의 보육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불가

- 영아반 교사의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

다. (사업기간)'17년 1월 ~ '18년 2월

라. 지원 절차

- 어린이집에서는 시·군·구청장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 시·군·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지원 조건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어린이집 선정
 -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어린이집은 지원조건이 중복되어도 개소당 보조교사 1명 지원
 - * 선정·지원 중인 어린이집은 반수(아동수), 평가인증유지 등에 미달하더라도 사업기간('17.1. ~ '18.2.) 중에는 계속 지원 가능
- 선정된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를 공개모집하여 선발하고, 시·군·구청에 임면보고 실시
 - 다만, 선정된 어린이집에서 장기간(채용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 교사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서는 후순위 어린이집 또는 지원신청 절차 등을 거쳐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선정 가능
- 시·군·구청에서는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
 - * 채용·임면에 관한 절차, 구비서류(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서 등) 등은 「보육사업안내」 준수
- (인건비 지원신청 및 지원)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의 인건비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시·군·구청에서는 내역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인건비 지급) 시·군·구청에서는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근무일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함
 - * 근무일수가 한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임용,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
(예) 1. 11.에 채용된 보조교사의 1월 급여 = 784,000원 × 21일/31일 = 531,097원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기간 및 시·군·구별 지급기간을 조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마. 유의사항

- 지자체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등 사업을 운영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지원조건 내 우선순위 마련하여 실시 가능
- 지자체에서는 보조교사가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 보조교사를 지원목적과 달리 활용하는 경우 즉시 지원 중단, 차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예시)

- 보조교사가 특정 반 담임교사나 원장겸 보육교사 반의 보육업무를 전담
- 보육·놀이·급식 등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업무 보조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의 행정적인 업무 및 운전·취사 등 기타 업무를 보조하거나 전담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인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교사로 근무

- 인건비 상한 연령(60세), 결격사유 확인 등 임면 보고, 근로계약체결, 복무관리, 경력인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육사업안내」 규정 준수

가. 정 의

-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나. 사업대상 어린이집 유형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부인건비지원 어린이집” 제외
 -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다. 선정 요건

선정 요건

- 참여 기본요건을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중 세부 선정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세부 선정기준에 따른 총 합계 점수가 85.00점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

- 참여 기본요건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0점 이상인 어린이집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6개월 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 (현원/정원×100)이 평균적으로 8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다만 농어촌 지역은 5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 정원충족률 산정기간은 각 시·도별 보육환경을 감안하여 1년까지 확대하여 적용가능함.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 제외 대상 어린이집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및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행정 처분 또는 처벌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 놀이터(옥외, 옥내, 인근놀이터를 말함)를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
-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된 경우 선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공공형어린이집 매도 경력이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매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의 10% 이상인 어린이집
- 아이사랑보육포탈을 통해 어린이집 정보공시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 세부선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2017년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참조(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라. 운영 기준

- 1)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확정된 달의 익월 1일부터 3년간 유효
- 2)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0 이상 유지
 - 공공형으로 운영 중에 3차지표 시범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경우 85점이상 유지 필요
- 3) 취약계층 우선 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 부여
 - 관할 지자체 요청 시, 시간연장, 장애아통합보육, 휴일보육, 시간제 보육 중 1개 이상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4)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 지원 단가(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수납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다음 달부터 적용함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으로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인하하는 대신 필요경비를 인상하여 추가로 수납할 수 없음

- 5)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최저 수준임) 이상으로 지급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다음 달부터 적용(대상 : 담임교사)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 전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 이상으로 월 급여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의 경우 종전 급여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선정 후 월 급여를 낮추거나 근무시간을 늘려 실질적인 월 급여를 낮출 수 없음
 -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호봉표는 306쪽 참조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1호봉 이상을 지급
 - ※ 월 지급액(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 1호봉 이상): 기본급, 계수당 등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금액 포함
4대 보험료 중 교사 본인부담분 포함(사업자 부담분은 교사급여가 아닌 어린이집에서 부담)
 - ※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산정은 월 지급액 기준
 - ※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국가·지자체가 직접 교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
 - 국공립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개정사항과 연동하여 지급하되, 어린이집 회계 연도에 따라 매년 3월부터 당해연도 지급기준 적용
- 6)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시간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다음 월부터 적용함
 - 공공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에 따라 평일 19:30분까지 운영하여야 함
 - 지역실정, 부모와의 협의를 이유로 단축 운영하여서는 안 됨(아동이 하원하는 경우에도 19:30분까지는 당직교사 등을 배치하여 보육수요에 대비하여야 함)
- 7)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필수 운영
- 8)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 영유아의 생명·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 ※ 다만, 기존에 민간보험회사 등에 동일한 보험상품을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상품의 계약기간 종료 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함
 - 그 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음
- 9) 한국보육진흥원 주관 사후품질관리 의무 참여
- 10) 어린이집 정보공시 현행화
- 11)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 준수

마. 품질 관리

1) 원장 및 교사 연수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연차에 따른 운영 및 관리과정 등에 대한 원장연수 및 실천적 지식 함양을 위한 교사연수 실시

2) 재무회계 개별 컨설팅 및 소그룹 교육

-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회계 운영 방법에 대한 1:1 개별 컨설팅 및 실습 중심의 소그룹 교육 실시

바. 지원 내용

1) 운영비 지원 : 2017년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참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2) 지자체 특수시책 예산(자체 지방비) 지원

- 공공형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시설로서 해당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3) 선정요건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기준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해당

사. 선정 취소 및 운영 포기

- 취소권자 : 시·도지사

- 선정 취소 사유

– 평가인증 취소 시

– 공공형어린이집 유효기간 내(3년) 평가인증 주기가 도래하여 재인증을 받은 결과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 기준점수) 2차 지표 : 90점, 3차 지표 시범사업 : 85점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 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부모협동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시·도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 단체, 법인 명의로 동일할 경우 공공형 유지 가능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평가인증 확인방문을 실시하여 인증을 유지하는 경우 공공형 유지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 후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1호부터 3호까지) 비용 및 보조금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어린이집 운영 정지 및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에 따라 평가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됨
-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 보육료 부정유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제외 사유 및 기본요건 미준수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구 운영비(정원기준)를 지급받는 어린이집 중 최근 6개월 정원충족률이 80% (농어촌 50%)에 미달한 경우
-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기준 보다 낮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조치하였으나, 같은 사항으로 재차 적발된 경우
- 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보다 높게 수납한 사례가 2개월 이상 적발된 경우
- 영유아보육법령, 지침 및 사후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소관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 관련 준수사항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 시정조치 되지 않았을 경우
 - 선정 확정 이후, 건물 소유 및 이용여부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시·도별 해당 어린이집 선정 시점의 커트라인 점수 미만일 경우
-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 ※ 과태료는 제외
-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어린이집

○ 선정 취소 절차 : 시·도에서 선정 취소

- 시·군·구는 선정 후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발생 사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서면보고
 - ※ 시·군·구는 행정처분(보조금반환명령, 운영정지, 과징금, 자격정지 등)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시,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하며, 시도는 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취소 사유를 7일 이내에 확인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처분 진행
 - ①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등 실시 : 어린이집의 의견서 제출에 충분한 기간을 둠
 - ② 공공형어린이집 취소처분 실시 : 어린이집 제출 의견서 검토 후 공공형 어린이집 취소 처분 결정
- 시·도는 시·군·구를 통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선정 취소 통보를 하고, 시·도(시·군·구)는 전산처리 및 보조금 지급 중지 등 관련 조치 함
- 시·도는 선정 취소 결과를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에 서면보고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시·군·구는 선정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선정취소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정서 및 현판을 회수하여 폐기한 후 시·도에 서면보고

○ 선정 취소일 : 처분 확정일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 절차 업무흐름도

업무주체	주요업무	상세내용
어린이집	-	• 선정취소 사유 발생
시·군·구	선정취소발생 확인·보고	• 선정취소 사유 확인 후 시·도에 서면 보고
시·도	취소 사유 확인 및 행정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및 행정처분 결정 • 시·군·구를 통하여 어린이집에 행정처분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처리 및 보조금 지급 중지 등 조치 • 선정취소 결과를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에 서면 보고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시·군·구	지정서 및 현판 회수·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의 선정 취소 후 결정사항을 어린이집에 통보 • 지정서, 현판 회수 폐기 서면 보고 → 사도지사

○ 선정 취소된 경우의 보조금 지급

- 선정 취소일이 속한 월까지 보조금 지급하고, 익월부터 보조금 지급 중단
 - 보조금을 지급받은 달에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로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비를 환수

○ 선정 취소 사후처리

- 선정 취소처분 시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서 및 현판을 회수하여 폐기함
- 선정이 취소된 공공형 어린이집은 2년간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통상적인 행정구제절차 이행 가능

[행정사항]

- 소송 중 집행정지 인용, 소송 승소 등으로 인해 선정취소 후 직권복원 시 익월부터 운영비 지급
 - 해당월에는 일반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되 익월부터는 공공형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집도 희망에 의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할 수 있음

- 해당 어린이집은 선정취하원을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고, 해당 시·군·구는 3일 이내에 시·도에 선정취하원을 제출, 시·도는 취하원 접수 및 해당 어린이집에 선정취소 통보
- 선정취소일이 속한 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익월부터 보조금 지급 중단(보조금을 지급받은 달에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운영 기준 준수)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어린이집은 선정취소일로부터 2년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이 제한됨

가. 지원내용

-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해 냉·난방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공과금, 차량운행비, 교직원 인건비 등의 운영비 일부 지원

나.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소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인건비 지원 대상지역 참고)

다. 지원기준

- 어린이집 규모(정원) 및 정원충족률*에 따라 차등 지원
* 정원충족률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익월 지원

- 지원단가

(단위 : 천원/월)

정원 구분	60인 이하	61~80인 이하	81~100인 이하	101~120인 이하	121인 이상
60%이하	240	250	260	270	280
61~80%	220	230	240	250	260
81~100%	200	210	220	230	240

라. 지원절차

-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영비 지원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운영비의 적정집행여부를 수시로 확인